

즉, 한국어항협회가 주관이 되어 소규모 어항의 구축사업, 추진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태풍만 내습했다 하면 상습적으로 피해를 입는 어민들이 이제는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런 어항을 개발하는데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기대해마지 않는다는 뜻이다.

특히 한국어항협회가 어차피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그런 대규모 단체로 탈바꿈할 것이 확실한 이상 우리 나라 곳곳에 있는 모든 어항을 재점검, 이에 관한 종합개발방안을 빠른 시일내에 제시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

전국적 조직 체계 갖춰야 관리등 협회서 담당할만

辛 英 泰 <韓國農村經濟研究院 責任研究員>

그동 안 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논의 되어 오던 어항법 개정안이 지난 5월 18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1969년 어항법이 제정된지 실로 24년만의 쾌거로서 앞으로 기대되는 바가 크다.

어항법 개정의 주요 골자를 보면 어항의 범위를 확대하고, 어항시설에 민간부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어항의 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토록 했고, 어항협회의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내용은 모두 중요하나 특히 어항관리기능 강화를 위한 조치를 강구토록 한 것과 어항에 관한 기술개발 및 연구조사기관의 설립 등은 필자도 평소에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터라 이번의 어항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어항은 단순히 어선 등 어민들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 기능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업생산요소를 공급하고 생산된 어획물을 양륙, 판매하는 유통가공기지이며, 육지와 어촌을 잇는 해상교통기지도 하다. 이렇게 어항은 어업생산에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어촌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있어서도 없어서는 안될 핵심적인 시설이다. 따라서 그동안 정부에서도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나 단일 사업으로서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자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어항의 관리 및 연구조사기능은 극히 취약성을 면치 못해 왔던 바, 우선 어항 관리는 그동안 수협에 위임해 왔으나 어민단체인 수협이 이를 원활히 관리하도록 기대한 것은 애당초 무리였고, 최근 해역별로 어항 사무소를 설치했으나 이 역시 어항의 관리에

는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개정 어항법에서 어항관리를 강조한 것은 적절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 어항의 관련 기술개발과 보급, 어항에 관한 연구조사 등은 학계와 업계, 관련단체 등에서 단편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어항의 감리, 준공검사 등 실무적인 사항은 정부에서 수행해 왔다. 그런데 어항의 감리와 준공검사 등은 정부에서 할 일이 아니고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케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데, 정부는 어항관련 정책개발과 행정적인 지원에 더욱 주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어항관련 기술개발, 보급 및 어항에 관한 연구조사 등도 이들 업무가 상당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를 종합할 때 어항관리, 어항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연구조사, 감리 등은 어항전문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관이 바로 어항협회가 될 수 있다.

특히 이번 어항법 개정을 통해 동 협회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형식적인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가능성은 그만큼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면에서 동 협회가 과연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우선 어항관리를 제외한 기술개발, 연구조사, 감리 등은 어느 정도 전문인력을 확보할 경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항관리는 그 업무가 방대한 관계로 장기적인 면에서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즉 몇개 항에 대해서 관리를 담당하는 데는 당장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나 전국의 어항을 전부 어항협회에서 관리하기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현재 전국의 국도를 관리하는 도로공사와 같은 전국적인 조직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체는 현재의 어항협회와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서 정부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를 검토, 그 결과에 따라 빠른 시간 내에 준비에 착수해 나가야 할 것이다. ㉠

3종 어항 확대 지정으로 낙도벽지어촌발전을 촉진

金 昇 <新安郡水協 專務>

지난 5월 18일 제161회 임시국회에서 개정된 어항법이 1993. 12.1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제까지 민법에 근거해서 설립하여 주무 부처의 인가를 받아 발족 운영